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46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최혜영·김남국·김민철

김병주 · 신현영 · 오영환

이수진 · 이용우 · 이원택

임오경 · 임호선 · 장경태

장철민 · 정청래 · 주철현

한준호 · 홍성국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8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의2제2항 중 "감안"을 "고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2(고용촉진) ① (생 략)	제18조의2(고용촉진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수급	②
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	
성을 <u>감안</u> 하여 관련 기관의 고	<u>고려</u>
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	
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